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31794, 2020. 1. 10.]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A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1. B 2. C

【제1심판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22. 선고 2018가소2603047 판결

【변론종결】

2019. 11. 15.

【판결선고】

2020. 1. 10.

【주 문】

- 1. 원고의 항소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2. 항소비용 중 원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들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조정신청서부본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30.부터 2019. 5. 2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들: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피고 B은 심리상담가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설립자이자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아내로서 D의 대표자이다.

원고는 2014. 11. 16. D를 방문하여 피고 B으로부터 E 기법을 이용한 심리 상담을 받았는데, 이 때 피고 B은 자신의 휴대폰으로 원고의 상담내용을 녹취한 후 그 음성파일을 D의 직원에게 전달하여 파일 및 녹취록 등의 형태로 보관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 B이 녹취한 원고의 상담내용에는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와 학력, 성장기 및 유학과정의 경험담과 사연, 스스로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 원고의 현재 직종과 근무 회사의 성격, 양친과의 관계 및 그들에 대한 평가, 지도교수 내지 직장 상사와의 관계 및 그들에 대한 평가, 연애 성향과 이성관, 한국 사회 및 역사와 종교에 대한 관점, 교회 생활, 모친의 거주지역, 각종 고민거리 등 원고의 내밀한 신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그 후 D는 2015. 4. 20.경 유료 세미나의 사례분석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수의 세미나 참가자에게 원고의 상담내용 녹취록을 메일로 전송하였는데, 그 녹취록에는 원고의 성이 생략된 이름이 남아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중 최소 2명의 참가자에게는 미처 익명화되지 않은 상태의 녹취록이 전송되기도 하였고, D에서 E전문가 과정을 이수한 F은 2015년경 원고의 상담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이용하여 이를 'G', 'H'이라는 제목의 책자로 만들어 시중에 판매하였다.

원고는 2017. 7월경 원고의 상담내용이 위와 같이 원고도 모르는 사이 D에서 녹취록으로 만들어져 세미나 자료로 배포되거나 책자로 편집되어 유통되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들에게 그 사실을 항의하면서 해당 자료의 수거와 폐기를 요구하였다.

한편 피고 B은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교수로 근무하면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총장의 허가 없이 D의 이사로 등재되었고, 11년간 수업이 있는 월요일에만 학교에 출근하고 나머지 요일에는 D로 출근하여 다수의 용역을 수행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16. 1. 29. 해임통지를 받았다.

[인정근거: 갑1 내지 2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2, 3, 6,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D의 실질적 운영자 내지 대표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이하'법'이라고 한다) 제15조, 제18조, 제23조, 제59조에 위반하여 원고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상담내용을 녹취하고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유출함으로써 원고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로 3,000만 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 B은 법이 정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D에서 유출된 원고 상담내용 녹취록 등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제작되었으므로 법이 정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그 수집 및 제공은 법에서 허용하는 연구 및 교육 목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2016년경 D의 세미나에서 내밀한 신상정보를 스스로 공개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들이 D의 원고 상담내용에 관한 수집 및 제공, 유출 등에 있어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F과 I은 원고의 상담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D에서 임의로 유출하여 책자로 발간하였는데, 피고들은 이에 가담하지 않았으므로 그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 B은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업무를 목적으로 원고의 내밀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상담내용을 스스로 또는 타인을 통하여 수집·저장·편집·이용·제공 등 처리한 사람이고, 피고 C는 그러한 개인정보 처리 업무가 이루어지는 D의 대표자이므로, 피고들은 위 법 제2조 제5호가 정한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 점, ② 원고가 피고 B에게 스스럼 없이 털어놓은 상담내용은 자신의 가치관, 가족·지인과의 관계와 그들에 대한 평가, 연애 성향, 역사와 종교에 대한

관점, 고민거리 등 원고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로서 법이 보호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점, ③ 피고 B은 원고의 동의 없이 위와 같은 원고의 내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였고, 나아가 D의 직원을통하여 다수의 사람들에게 원고의 개인정보를 유료 세미나 자료로 제공하거나 이를 유출한 점, ④ 피고들은유료 세미나 과정 등에서 수익을 얻기 위하여 원고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편집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예외적인 적법성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자료가없는 점, ⑤ 원고가 D의 세미나에서 대면한 참석자들에게 자신의 경험이나 사상을 이야기하였다고 하여 D에서 원고의 상담내용을 자료화하여 배포할 것까지 예상하거나 이를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F은D에서 제공한 자료를 기초로 사례분석 녹취록을 작성하였고, 2015. 7. 13.경 피고 B에게 위 사례분석 녹취록을송부하기도 하였는데, 피고 B은 F에게 "한 부는 연구소에서 구입해야 할 듯 합니다."라며 격려하였으며, F이발간한 'G' 머리말에 발간사를 게재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F과 I이 독단으로 원고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는바, 피고들은 법에 위반하여 원고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고 그 유출을 초래한개인정보처리자로서 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인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할 것이다.

나. 위자료의 수액

앞서 본 바에 의하면, D가 원고의 동의 없이 수집하여 배포한 상담내용에는 원고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원고로서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들 운영의 D에서 이루어진 민감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수집과 배포는 영리를 목적으로 반복적·분업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무릇 상담자에게는 내담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체득한 상담내용의 비밀을 엄수할 의무가 강조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상담자의 비밀엄수의무 및 내담자의 신뢰 보호에 대한 몰각의 정도가 심각한 점, 개인정보 침해의 고의와 수단, 제3자에게 전파된 개인정보에 대한 식별가능성의 정도, 책자배포로 이어진 2차 유출 경위, 피해 경감을 위한 피고들의 사후 조치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위자료를 10,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조정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 30.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5. 2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연 15%의 각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헌석(재판장) 이희준 정원석